

에너지 자원개발과 국제협약

류 권 홍*

차 례

- I. 서 론
- II. 투자자 보호와 국제협약
 - 1. 자원보유국과 투자자의 입장
 - 2. 투자자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III. 국유화조치와 국제협약
 - 1. 국유화조치와 자원개발
 - 2. 국유화조치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국제협약
- IV. 분쟁의 해결
 - 1. 에너지 자원개발과 분쟁의 해결
 - 2. 에너지현장조약에서의 분쟁해결
 - 3. 양자조약을 통한 분쟁해결
- V. 환경보호
 - 1. 에너지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 2. 자원개발권 취득 과정에서의 환경보호
 - 3. 자원개발 실행 단계에서의 환경보호
 - 4. 생산물 통제를 통한 환경보호
 - 5.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연성법(Soft Law)
- VI. 결 어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접수일자 : 4월 29일 / 심사일자 : 6월 3일 / 게재확정일자 : 6월 3일

I. 서론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천연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 일본 등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원자력 기술이 발전한 나라들을 위주로 적극 추진되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일본에서의 사고에 따른 안전성 문제 때문에 기존의 원자력 위주 정책에 대한 중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가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중요한 연료로 논의되고 있으나, 2011년 BP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이 되어도 신재생에너지의 전체에너지에 대한 비율이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¹⁾ 그리고 2030년 석유·석탄·천연가스를 포함하는 화석연료가 각 약 26-27%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주된 에너지원으로서의 지위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²⁾ 그렇다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화석연료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또한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수요를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 화석연료에의 의존이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효율의 증대 및 화석연료의 사용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이 우리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어야 한다.

1) BP, Energy Outlook 2030, London, January 2011, p. 18. 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원자력과 수력이 제외되고 있다.

2) Ibid, 19. 다른 메이저 석유회사의 예측도 거의 유사하다. ExxonMobil, The Outlook for Energy a view to 2030, January 27, 2011, p. 38.

에너지원의 97%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전체 소비량의 87%가 화석연료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화석연료의 개발과 이를 위한 제도적·금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우리나라의 자원개발회사들은 에너지 자원의 개발에 따르는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자원의 개발과 관련되어 논의되는 위험은 시장위험(Market Risk)·신용위험(Credit Risk)·금융위험(Financial Risk)·건설위험(Construction Risk)·운영위험(Operating Risk)·법률적 위험(Legal Risk)·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환경위험(Environmental Risk)·사회적 위험(Social Risk) 등을 예로 들 수 있다.³⁾ 이런 위험들 중 개발회사, 운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이 계약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가 하면, 법률적 위험·정치적 위험·환경위험·사회적 위험처럼 단순히 계약의 방식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위험들이 존재한다.

이런 위험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국제조약을 통한 투자자의 보호이다. 이하에서는 그 중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 투자자 보호, 국유화, 분쟁의 해결 그리고 환경보호의 문제와 관련된 국제협약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II. 투자자 보호와 국제협약

1. 자원보유국과 투자자의 입장

자원개발은 고도의 자본집약적 투자 산업이며 막대한 규모의 선행투자가 요구된다. 자원부국인 선진국들은 스스로의 자금력과 기술 및 인력으로 자원개발을 수행할 수 있지만, 후진국인 자원부국들은 자본, 기술 및 인력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인 자원개발을 수행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오지(奧地), 해상(Off-shore)

3) 류권홍, 국제 석유·가스 개발과 거래 계약, 한국학술정보, 2011, 67-70쪽.

에서의 자원개발은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면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 개발회사들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자원보유국이 개발회사를 자원개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기타 일체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을 개발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⁴⁾

한편, 개발회사는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적절한 이익을 취득하려 하는 목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고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투자가 보장될 것인지를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⁵⁾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개발회사들은 단순히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자원보유국을 위해 또는 자원보유국을 대신하여 자원개발행위 일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⁶⁾

이하에서는 에너지 자원 개발과 관련된 투자자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살펴본다.

2. 투자자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 투자자보호 협약의 필요성

자원보유국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 또는 적법한 행위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입게 되는 손해·손실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자원보유국 내의 사법절차에 의해 보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원보유국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자원보유국의 사법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는 갖추어져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운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자원개발로 인한 분쟁을 국제법적인 규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인 개발회사

4) Ernst E. Smith, John S. Dzienkowski, Owen L. Anderson, John S. Lowe, Bruce M. Kramer, Jacqueline L. Weaver, *International Petroleum Transaction*(3rd Edition), Rocky Mountain Mineral Law Foundation, 2010. p.55.

5) Daniel Johnston, "Changing fiscal landscape", *Journal of World Energy Law & Business*(vol. 1, No. 1) 2008, p.31.

6) 지리적·지구물리학적 기술 및 대규모 프로젝트의 실행 능력을 포함해서 자원개발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시행한다는 의미이다.

입장에서 볼 때 훨씬 유리하다.

자원개발 협정이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도록 작성되기 위해서는 준거법·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자원개발 협정의 상대방이 자원보유국 정부인 경우 분쟁의 해결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포기 등을⁷⁾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⁸⁾

자원개발 협정서에 투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는 개발회사의 파산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도 이를 수 있으며, 그 간 투자한 모든 시간·자산과 재원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2) 양자투자협정에 의한 투자자보호

1) 양자투자협정

양자협정은 가장 보편적인 투자보호의 수단이며, 협정 당사국들은 상호 간 상대국 국민의 상대국에서의 투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⁹⁾ 양자협정은 18세기 이래의 우호통상항해조약(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에서 기원하지만,¹⁰⁾ 우호통상조약은 통상의 범위를 넘어 출입국, 체류 및 여행의 자유,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통상’의 범위를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투자협정과 다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¹⁾

1959년 독일과 파티스탄 사이에 최초의 양자투자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2008년 말까지 약 2,676개의 협정이 이루어졌다.¹²⁾ 천연자원과 관련된 자

7) 물론 자원보유국이 주권면제를 주장하지 못하더라도, 국가행위(the Act of State) 또는 정치적 행위임을 주장하여 그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 국유화와 관련된 분쟁에서 자원보유국 정부는 국가행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8) 류권홍, 앞의 책, 301쪽.

9) Noah Rubins, N. Stephan Kinsella,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tical Risk and Dispute Resolu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191.

10) 이하, 우호통상조약이라 한다.

11)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6, 805쪽.

12) UNCTAD, "Chapter I, Global Trends, FDI Flows in Decline",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p.33.

원주권주의가 국제법적 원칙으로 확립된 이래로 선진국들이 자국 회사들의 보호를 위해 많은 양자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들이 다른 개발도상국 또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주의 경제로부터 자본주의 경제로 시스템이 전환되는 국가들과의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¹³⁾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 및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양자투자협정이 증가되었고, 1964년 독일과 체결한 이래로 68개의 양자투자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경향이다.¹⁴⁾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양자투자협약은 개발회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본 수출국으로부터 자본 수입국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자협정이 이용되고 있으며,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자원보유국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자본을 효과적으로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국제사회의 커다란 흐름이었던 자원주권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자원주권주의는 자원보유국의 국유화(Nationalization)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었고,¹⁵⁾ 이런 국유화조치로 인해 개발회사와 자원보유국 사이에 수많은 분쟁들이 발생하였으며 여기서 양자조약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⁶⁾

특히 UNCTAD의 2008년 투자자-국가 간 분쟁에 대한 최근 경향(Latest Development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따르면, 약 39%에 이르는 중재사례들이 전력 배전(Electricity Distribution), 통신, 수도 서비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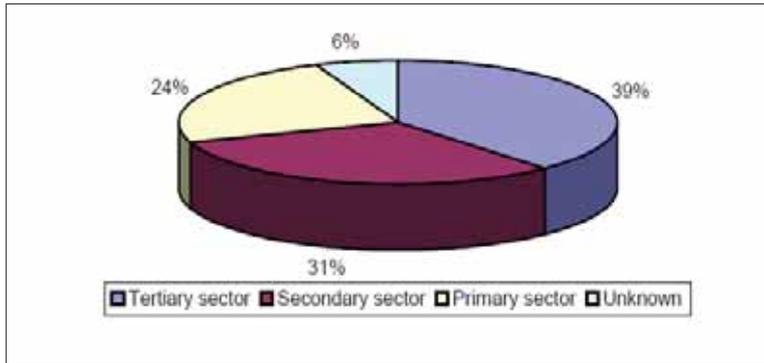
13) Noah Rubins, N. Stephan Kinsella, *ibid* n. 9, p.10.

14) ICSID, Database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2011, <<http://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 at 28 March 2011.

15) 유엔결의 제1803호 제4조에 따르면, 국유화는 국가적 이익, 공적 필요 또는 안보에 기초하여 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도 소유자에게 주권의 행사로 국유화 등의 조치를 실행하는 당사국의 법률과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16) *Libya v Libyan Am. Oil Co.* 20 I.L.M. 151 등의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분야와 관련된 것이며, 24%에 달하는 1차 산업에 관한 중재들은 모두 광업과 석유·가스 개발과 관련된 분쟁이었다.¹⁷⁾



Source : UNCTAD

〈그림 1〉 투자조약 관련 중재의 산업별 비율

이렇게 다루어진 대부분의 사례들은 양자조약의 위반이 78%에 이르며, 나머지 약 13%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 그리고 약 6%가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위반에 관한 것이었다.

2) 양자협정의 주요 내용

양자협정들은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협정의 적용범위가 우선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적용범위에서는 양자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자의 개념과 투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다. 그런 다음 실질적 내용들을 정하는데, 자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국유화에 대한 보상 및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의 원칙 등을 명시한다. 양자협정의 위반에 대한 구체절차로, 1970년대에는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임시적(ad hoc) 재판기구가 선호되었으나 최근에는 국제중재를 통한 해결방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¹⁸⁾ 양자협정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7) UNCTAD, <<http://www.unctad.org/Templates/Download.asp?docID=9740&intItemID=3073&lang=1>> at 4 April, 2011.

18) Noah Rubins, N. Stephan Kinsella, *ibid* n. 9, p.193.

외국인 재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초안(the 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Foreign Property)이 초기 양자협정의 중요한 기초로 사용되었는데, 이 협정 초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반 원칙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가장 일관된 보호와 보장(Most Constant Protection and Security) 그리고 비합리적이고 차별적 수단의 배제(Exclusion of Unreasonable and Discriminatory Measures) 등이다.¹⁹⁾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대우를 위해 많은 양자협정들은 자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조항과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이 두 기준 중 더 유리한 조항을 주장함으로써, 자원보유국 국민뿐 아니라 제3국 투자자들과의 평등한 대우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²⁰⁾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양자협정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국유화와 이에 따르는 보상에 관한 조항이다. 자원개발에 있어서의 국유화는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법상 자원민족주의에 기초한 자원주권의 적법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²¹⁾

또한 투자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가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19) OECD, 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Foreign Property, 1967.

Article 1. Treatment of Foreign Property

(a) Each Party shall at all times ensur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o the property of the nationals of the other Parties. It shall accord within its territory the most constant protection and security to such property and shall not in any way impair the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thereof by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easures. The fact that certain nationals of any State are accorded treatment more favourable than that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regarded as discriminatory against nationals of a Party by reason of only of the fact that such treatment is not accorded to the latter.

20)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10, 753쪽.

21) 류권홍, “석유·가스전 개발에 있어서의 수용 또는 국유화 - 간접적·점진적 국유화를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26권 제3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6-17쪽.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3)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1) 에너지헌장조약의 체결

에너지헌장조약은 소비에트의 몰락과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인한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과 유럽사회의 근본적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에너지원(Energy Sources)은 모든 경제의 동력원이며, 개발도상국과 전환단계의 국가들(Transition Economies)에게 있어서 경화(Hard Currency)를 취득하는 주요 수단이 자원의 판매였기 때문에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 요구되었고, 또한 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자본·기술·노하우의 이전이 절실했기 때문에 이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틀로 형성된 것이 에너지헌장이었다.²²⁾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장기적 협력의 증진을 위한 법적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이 그 목적으로 강조되고 있다.²³⁾

현재까지 유럽연합을 포함한 52개 국가들이 서명하였으나, 호주를 비롯한 5개 국가가 인준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²⁴⁾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하는 점은 러시아가 2009년 10월 20일 확고하게 에너지헌장조약을 인준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므로 더 이상 러시아는 에너지헌장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라는 점이다.²⁵⁾ 그 원인은 1990년대 이후의 우크라이나와의 천연가스 수송망 관련 분쟁과 2004년 유코스(Yukos)사에 대한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에 따른 국제중재 과정에서 에너지헌장조약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²⁶⁾

22) Energy Charter Secretariat, The Energy Charter Treaty, A Reader's Guide, <http://www.encharter.org/fileadmin/user_upload/Publications/ECT_Guide_ENG.pdf> at 5 April 2011, p.7.

23) Energy Charter Treaty,

Article 2. Purpose of Treaty,

The Treaty establishes a legal framework in order to promote long-term cooperation in the energy field, based on complementarities and mutual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24) Energy Charter Treaty, Status of Ratification of the Energy Charter Treaty as of October 2009, <http://www.encharter.org/fileadmin/user_upload/document/ECT_ratification_status.pdf> at 5 April 2011.

25) Ibid, Russia, <<http://www.encharter.org/index.php?id=414&L=0#c1338>> at 5 April 2011.

26) Yukos Universal Limited(Isle of Man) and The Russian Federation, PCA Case No. AA 227.

1994년 체결된 에너지헌장조약의 실질적 의미는 기존의 구속력 없는 유럽 에너지헌장조약(European Energy Charter Treaty)으로부터 한 단계 발전하여 구속력(Binding)이 인정되는 형태의 다자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다.²⁷⁾

이런 에너지헌장조약의 중요한 내용은 투자자보호·에너지, 에너지 생산물 및 에너지 관련된 장비의 거래·에너지 통과와 자유²⁸⁾·에너지 효율성의 증대·국제 분쟁의 해결·개선된 법적 투명성 등이다.²⁹⁾ 에너지헌장은 또한, 에너지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상호보완과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에너지 분야의 장기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 에너지헌장조약과 투자자보호

에너지헌장조약은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의 양자조약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을 따르고 있으나, 양자조약과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 차이점은 첫째, 에너지헌장조약은 다자조약의 틀을 갖추고 있으며, 둘째 투자에 대한 쟁점뿐 아니라 수송과 거래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이들 사이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셋째, 에너지 관련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항구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장차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차별금지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는 기초를 구축했다는 점 등이다.³⁰⁾

에너지헌장조약은 우선 '투자(Investment)'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일반적 처우·차별 금지의 원칙·손실보상·자본금 등 송금의 자유·개별 투자 계약의 위반 등에 따르는 자원보유국 내에서의 중요한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증진

27) Thomas W. Wälde, "Investment Arbitration under Energy Charter Treaty: From Dispute Settlement to Treaty Implementation", 12 Arbitration International, 1996, p. 429-330.

28) 수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원어의 표현이 'Transit'이므로 '통과'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29) Energy Charter Secretariat, above n. 22, p.9.

30) Ibid, p.20.

시키고 있다.³¹⁾

가. 투자 등의 개념

에너지현장조약은 에너지 개발관련 투자에 특화된 협약이므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현장조약의 개념들은 향후 다른 양자조약이나 새로운 에너지 다자협약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크며, 에너지관련 분쟁에서 해석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에너지현장조약은 구체적으로 투자·에너지 분야에서의 경제활동·에너지 물질과 생산물에 대한 개념을 두고 있는데, 투자란 ‘투자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거나, 소유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한다고 정의되고 있다.³²⁾

에너지현장조약에서 에너지 분야에서의 경제활동이란 ‘에너지 물질 및 생산물의 탐사(Exploration), 추출(Extraction), 정제(Refining), 생산(Production), 저장(Storage), 육상 운송(Land Transport), 배관에 의한 수송(Transmission), 배관에 의한 배송(Distribution), 거래(Trade), 마케팅(Marketing) 또는 판매(Sale)’를 의미한다.³³⁾

그리고 에너지 물질 또는 생산물(Energy Materials and Products)은 부속서에 정의되어 있는데, 원자력 에너지·석탄, 천연가스, 석유 및 석유 제품, 전기 에너지·기타 에너지로 구분되어 있다.³⁴⁾

결국, 에너지현장조약의 적용범위는 일정한 에너지 물질 또는 생산물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투자로 정의될 수 있다.

나. 투자의 증진, 보호 및 관리

에너지현장조약에 따르면, 각 체약국들은 다른 체약국들의 국민인³⁵⁾ 투

31) 국유화의 위험도 있으나 이는 뒤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논의된다.

32) Energy Charter Treaty, Article 1(6). 투자에는 유형·무형, 동산·부동산을 포함하는 재산 및 재산권, 회사나 사업체·지분·기타 일체의 형태에 의한 회사 또는 사업체에의 참여, 금전적 또는 이행 청구권, 지적재산권, 수익>Returns), 법률·계약 또는 허가에 의해 취득한 권리가 포함된다.

33) Ibid, Article 1(5).

34) Ibid, Annex EM.

35)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아래에서도 같다.

자자들이 자국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형평성에 맞으며, 우호적이고 투명한 조건들을 수립하거나 더욱 강화할 의무가 있다.³⁶⁾ 동시에 투자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대해야 하는 의무도 강조되고 있다.³⁷⁾

다. 차별금지의 원칙

먼저 실행된 투자에 대해서 계약국인 자원보유국 정부는 자국민(National Treatment) 또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³⁸⁾ 에너지현장조약은 다른 계약국 국민의 투자에 대해서 운영·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에 있어서 내국인 또는 특정 제3국의 투자자들의 해당 행위에 대한 처우보다 못한 처우를 금하고 있다.³⁹⁾ 따라서 만약 계약국이 외국인 투자자가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또는 특정 제3국의 국민에게만 배타적인 수출허가를 부여한다면 이 행위는 에너지현장조약 위반이 된다.⁴⁰⁾

다만 조세문제·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은 그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즉, 에너지현장조약 제21조 제1항은 달리 규정이 없는 한, 계약국들의 조세문제와 관련한 어떤 권리를 창설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에 대한 예외는 제10조 제8항에서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예외는 제10조 제10항에서 각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차별금지의 원칙은 이미 실행된 투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데(Post-Establishment Phase), 에너지현장조약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투자의 사전단계(Pre-Establishment Phase)까지 확장하려 하였으나, 최종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중간 정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투자의 사전단계에도 차별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투자에 요구되는 승인 기타의 허가절차에서도 내국인 또는 특정 제3국의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36) Energy Charter Treaty, Article 10(1).

37) Ibid.

38) 최승환, 앞의 책, 183쪽.

39) Energy Charter Treaty, Article 10(7).

40) Energy Charter Secretariat, above n. 22, p.22.

에너지헌장조약이 이 부분에 대해 중간정도의 타협을 하고 있음은 제 10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각 체약국들은 투자의 형성 단계(Making of Investment)에서⁴¹⁾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Shall endeavour to)을 다해야 한다. 또한 체약국들은 새로운 제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⁴²⁾ 더불어, 체약국들이 투자의 형성단계에도 차별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적 조약(Supplementary Treaty)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⁴³⁾

라. 내부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에너지헌장조약 제12조는 전쟁 또는 다른 형태의 무장 분쟁, 국가 비상사태, 시민 폭동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배상·원상회복 기타의 분쟁해결에서도 차별적 대우를 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체약국이 자국민 또는 특정 제3국의 국민에게 보상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면,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⁴⁴⁾

또한 체약국의 물리력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징발(Requisitioning) 또는 파손(Destruction)에 대해서는 즉시·충분하고 효과적인 원상회복 또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⁴⁵⁾

마. 개별투자약정

투자자들이 체약국과 별도의 투자약정(Individual Investment Contract)을 체결하는 경우, 체약국은 이를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⁴⁶⁾ 이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Pacta Sunt Servanda)을 확인한 것이며, 개별투자약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에너지헌장조약의 규정은 체약국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투자약정의 위반뿐 아니라, 에너지헌장조약도 위반하게 된다는 데

41) Energy Charter Treaty, Article 1(8)에 Making of Investment이 정의되어 있다.

42) Ibid, Article 10(5).

43) Ibid, Article 10(4). 보완협약에 대한 논의는 1995년부터 진행되었으나, 아직 종결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44) Energy Charter Secretariat, above n. 22, p.25.

45) Energy Charter Treaty, Article 12(2).

46) Ibid, Article 10(1).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체약국의 투자약정 위반에 대해 에너지 현장조약이 정하는 분쟁해결절차를 따를 수 있게 된다. 다만 제26조 제3항 제C호는 개별투자약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국제중재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체약국들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⁴⁷⁾

바. 기타

에너지현장조약은 이외에도, 송금의 보장(Transfer of Payment),⁴⁸⁾ 국적에 제한 없는 중요 인력의 채용(Key Personnel),⁴⁹⁾ 대위(Subrogation/Transfer of Rights)⁵⁰⁾ 등 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III. 국유화조치와 국제협약

1. 국유화조치와 자원개발

자원개발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위험이 국유화조치이다. 1911년 멕시코 혁명 이후, 자원개발회사와 멕시코 정부 사이의 팽팽한 법리논쟁 및 정치논쟁은 1937년 석유산업 근로자들의 파업을 거쳐 1938년 3월 18일 전격적인 석유 산업 전반의 국유화 조치에 이르게 되었다.⁵¹⁾ 이런 멕시코의 국유화조치는 국제법상 자원민족주의가 성립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으며,⁵²⁾ 중동에서 새로운 형태의 양허계약의 출현 및 국유화조치의 시발점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국유화조치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 및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이며, 거래의 퇴행성이라는 논리로 설명되기도 한

47) 호주, 캐나다, 헝가리, 노르웨이 등이다. 캐나다의 경우는 아직, 에너지현장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Energy Charter Treaty, Annex IA.

48) Energy Charter Treaty, Article 14.

49) Ibid, Article 11.

50) Ibid, Article 15.

51) Ernest E. Smith & John S. Dzienkowski, "A Fifty-Year Perspective on World Petroleum Arrangement", 24,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1989, p.29-30.

52) Ibid, p.30.

다.⁵³⁾ 국유화조치는 법리적으로 자기방어, 독립, 주권 및 형평성의 원칙들에 근거하고 있다.⁵⁴⁾

국유화조치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첫째 다국적 개발회사의 활동을 제한하며, 둘째 자원개발에서의 자원보유국 정부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⁵⁵⁾

2. 국유화조치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국제협약

(1) 양자조약에 의한 보호

자원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동시에 국영기업체들의 특권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적(私的) 당사자들의 개발계약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⁵⁶⁾

이런 자원보유국들의 노력이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여 투자의 실질적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약에 의해 약속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은 자원보유국들의 국유화조치에 대한 보장수단들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을 품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원보유국이 조약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세계시장에서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험'한 국가라는 신호로 인식되고 있다.⁵⁷⁾

양자조약에 국유화의 목적이 공익적일 것, 무차별성,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장이 주어질 것 및 국유화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계약국이 임의적으로 국유화조치의 실행할 수 없게 할 수 있고, 또한 국유화조치로 인한

53) 류권홍, 위 주석 21, 11-12쪽.

54)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8, p.537.

55) Paul Stevens, "National oil companies and international oil companies in the Middle East: Under the shadow of government and the resource nationalism cycle", *Journal of World Energy Law & Business* Vol. 1, No. 1, 2008, p.5.

56) Robert Pritchard, "Safeguards for Foreign Investment in Mining",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Mineral Law and Policy*,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p.85.

57) Ibid.

보상·보상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자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자원보유국에서 자원개발을 실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국유화에 대한 대응책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더 살펴본다.

(2) 에너지현장조약

자원개발 특히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다자협약인 에너지현장조약 제13조는 계약국은 공익의 목적으로, 무차별적이며, 적법절차에 의해 그리고 즉시·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국유화조치를 시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보상의 기준으로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시장가치는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환전될 수 있는 화폐(Freely Convertible Currency)로 표시되어야 한다.⁵⁸⁾ 나아가 이런 가치판단은 국유화조치 또는 국유화조치에 임박한 시점의 바로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판단기준일(Valuation Date)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화조치의 정당성, 가치의 판단 및 보상 등에 대한 분쟁은 국유화를 시행한 국가의 법원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결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⁵⁹⁾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3) 국제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협약

국유화조치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조약은 1965년 체결된 국제투자분쟁

58) Article 13. Expropriation

(1) ... Such fair market value shall at the request of the Investor be expressed in a Freely Convertible Currency on the basis of the market rate of exchange existing for that currency on the Valuation Date.

59) Ibid. (2) The Investor affected shall have a right to prompt review,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making the Expropriation, by a judicial or other competent and independ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of its case, of the valuation of its Investment, and of the payment of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set out in paragraph (1).

해결을 위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이하 'ICSID 또는 국제투자분쟁센터'라 한다.)이다. 국제투자분쟁센터는 뒤에서 보는 분쟁의 해결과 관련되어 있으나, 국유화와 관련된 아주 많은 사례들이 이 센터에 의해 판단되어 왔으며 그 판단들이 국유화에 관한 선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5월 17일 선고된 국제투자분쟁센터의 중재결정에 따르면, 투자란 '자원보유국의 긍정적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⁶⁰⁾

(4) 다자투자보증기구협약

다자투자보증기구협약(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Convention) 또한 국유화와 관련된 중요한 다자협약이다. 다자투자보증기구협약은 상업적 위험이 아닌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증과 기타 보증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기구를 설립하여 국제개발은행(IBRD)의 업무를 보완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안정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⁶¹⁾

그 중 국유화조치와 관련하여, 다자투자보증기구는 자원보유국 정부의 행위로 인해 보험에 가입된 투자자의 권리·통제권 또는 소유권이 박탈되거나 그 권한 행사가 제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호하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의 국유화는 전격적인 국유화와 수용은 물론이고, 점진적 국유화(Creeping Expropriation)와⁶²⁾ 부분적 국유화(Partial Expropriation)를 포함한다. 국유화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순장부가치방식(Net Book Value)에 기초한다.⁶³⁾ 다만, 다자투자보증기구의 국유화조치에 대한 보증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원보유국 정

60) Malaysian Historical Salvors, SDN, BHD v. Malaysia, [2007], (ICSID Case No. ARB/05/10), para 68.

61)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Article 2. Objective and Purposes.

62) 류권홍, 위 주석 21. 17-25쪽. 여기서 표현하는 점진적 국유화는 간접적 국유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63) MIGA, <http://www.miga.org/guarantees/index_sv.cfm?stid=1547>, at 10 April 2011.

부가 차별을 두지 않는(Non-Discriminatory Measures) 국유화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⁶⁴⁾

(5) 세계은행 가이드라인

1992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해외직접투자의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The World Bank 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을 작성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성격밖에 가지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에너지현장조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⁶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국적과 보상에 있어서의 차별 없이, 공익 목적을 위해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유화 또는 다른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자국 내 투자 자산에 대한 전체적 또는 부분적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⁶⁶⁾ 또한, 가이드라인은 국가가 국유화를 시행하는 경우 충분하고(Adequate), 효과적이며(Effective) 즉시(Prompt) 보상할 때 해당 국유화 조치를 “적절(Appropriate)”한 것으로 간주한다.⁶⁷⁾

세계은행 가이드라인이 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국유화조치에 대한 보상의 기준에 관한 부분이다.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전체적 상황, 투자의 성격, 투자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공정한 시장가격을 보상기준으로 정하고 있다.⁶⁸⁾ 또한 사

64) MIGA Convention Article 11. Covered Risks

(ii) Expropriation and Similar Measures

any legislative ac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or omission attributable to the host government which has the effect of depriving the holder of a guarantee of his ownership or control of, or a substantial benefit from, his investment, with the exception of non-discriminatory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which governments normally take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economic activity in their territories;

65) Robert Pritchard, above n. 56, p.85.

66) World Bank, The World Bank 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rticle IV. Expropriation and Unilateral Alterations or Termination of Contracts. Section 1.

67) Ibid, Section 2.

68) Ibid, Section 4, 5.

업의 계속성(a going concern)이 인정되는 경우는 현금할인방식(Discounted Cash Flow Value)을, 지속가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를 각 보상기준으로 하며, 기타의 자산에 대하여는 재조달 가치(Replacement Value) 또는 장부가치(Book Value)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⁶⁹⁾

세계은행의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양자조약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에서 적법성·보상기준 및 절차 등 국유화와 관련된 조항의 작성 기준이 될 있으며, 투자자가 가이드라인을 인용하는 개별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IV. 분쟁의 해결

1. 에너지 자원개발과 분쟁의 해결

자원개발과 관련된 가장 잘 작성된 협정서는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법 그리고 자원보유국 정부 또는 국영자원회사가 당사자인 경우 주권면제의 포기(Waiver of Sovereign Immunity) 문제가 명시적으로 다루어진 협정서이며, 초기단계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분쟁에 대한 해결의 틀과 원칙을 정하는 것은 자원개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석유·가스를 포함하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정치·경제·문화·법체계 등의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의 거래보다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훨씬 높고 분쟁의 가액도 수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약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쟁 자체의 해결 절차를 위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교착상태(Deadlock)에 빠져 투자비 회수는 물론이고 생산을 통한 수익까지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최악

69) Ibid, Section 6.

의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된다.⁷⁰⁾

2. 에너지현장조약에서의 분쟁해결

기존의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국가들에 신뢰할만한 사법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투자자들 또한 이들 국가 내부의 법원에 의한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양자는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에너지현장조약은 가장 발전된 형태의 분쟁해결 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⁷¹⁾

에너지현장조약은 에너지현장조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한 국가-국가 중재와⁷²⁾ 투자 분쟁과 관련된 투자자-국가 중재⁷³⁾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은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3개월의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⁷⁴⁾ 자원보유국 국내 법원 또는 행정재판기관·사전 협의된 분쟁해결방식·국제중재기관 중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분쟁기관이 정해진다.⁷⁵⁾ 그리고 투자자가 국제중재를 택하게 되면,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스톡홀름 상사중재원 중 하나가 국제중재기관이 된다.⁷⁶⁾ 그리고 모든 국가가 당사자인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권면제 주장을 배제하기 위해, 계약국들은 투자자들이 국제중재 또는 알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무조건적인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⁷⁷⁾ 중재는 모두 에너지현장조약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⁷⁸⁾ 중재 결정은 구속력을⁷⁹⁾ 가진다. 또한, 중재는 뉴욕협약(United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70) Claude Duval, Honoré Le Leuch, André Pertuzio, Jacqueline Lang Weaver, International Petroleum Exploration and Exploration Agreements, Barrows Company Inc, 2009, p.349.

71) Energy Charter Secretariat, above n. 22, p.51.

72) Ibid, Article 27. 다만 제6조의 경쟁법과 제19조의 환경문제는 예외로 되어 있다.

73) Ibid, Article 26.

74) Ibid, Article 26(1).

75) Ibid, Article 26(2).

76) Ibid, Article 26(4). 다만, 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의 경우는 그 중재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77) Ibid, Article 26(3). 다만 그 예외로 Annex ID와 Annex IA 국가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78) Ibid, Article 26(6).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의 체약국인 국가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중재결정의 집행 문제도 해결하였다.⁸⁰⁾

이에 반해 국가-국가 중재는 투자에 관한 분쟁 뿐 아니라 에너지현장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Concerning the application or interpretation of this Treaty) 으로⁸¹⁾ 그 대상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이 국가-투자자 중재와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국가-국가 중재는 임시중재(ad hoc tribunal)를 통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약국들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국제상거래위원회의 중재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⁸²⁾

에너지현장조약은 이와 별도로 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국제무역기구(GATT/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기초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⁸³⁾ 에너지의 통과(Transit)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도 에너지현장조약 사무총장의 알선을 기본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⁸⁴⁾ 에너지현장조약은 경쟁법 위반 관련 분쟁의 해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나, 상대방 체약국에 경쟁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국내법상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이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⁸⁵⁾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항도 있으나, 경쟁법의 경우와 같이 에너지현장 협의체(Charter Conference)에 의해 재검토된다는 정도의 수준일 뿐이다.⁸⁶⁾

3. 양자조약을 통한 분쟁해결

많은 국가들이 양자조약에 분쟁해결절차를 두고 있고, 우호적인 해결과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중재에 의한 해결을 택하고 있다.⁸⁷⁾ 2004년 미국의

79) Ibid, Article 26(8).

80) Ibid, Article 26(5)(b).

81) Ibid, Article 27(1).

82) Ibid, Article 27(2).

83) Ibid, Article 29.

84) Ibid, Article 7(7).

85) Ibid, Article 6(5).

86) Ibid, Article 19(2). 즉, 에너지현장 협의체가 일종의 자문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87) 김대순, 앞의 책, 754쪽.

투자촉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모범 양자조약(U.S.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먼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⁸⁸⁾ 협의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투자분쟁센터·국제상거래위원회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다른 중재기관에 중재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⁸⁹⁾ 그리고 당사국들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규정을 두어 중재합의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⁹⁰⁾

V. 환경보호

1. 에너지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자원개발에는 최근 많은 변화 요인들이 있는데, 수요의 변화와 이에 대한 공급의 가능성 여부·광범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개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 변화·환경문제의 해결을 금융과 원조의 전제 조건화하는 국제금융기관들의 관행·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이 대표적인 요인들이다.⁹¹⁾ 그 중 환경문제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자원개발권 취득 과정에서의 환경보호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원이 존재하는 부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부지사용과 관련한 규제는 크게 자연보호구역 같은 특별 지역의 지정을 통한 보존·생태학적 보존·인류공통 자산(Global Commons)에 대한 보존·환경영향평가·공중의 참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⁹²⁾

88) Ibid, Article 23: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89) Ibid, Article 24: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90) Ibid, Article 25: Consent of Each Party to Arbitration.

91) George(Rock) Pring and Linda Siegele, "International Law an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Mineral Law and Policy, Klumer Law International, 2005, p.127-128.

(1) 특별보호구역 보존에 관한 협약

일정한 지역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1940년대 이래로 많은 협약들이 체결되었다. 1972년 유엔 교육, 사회, 문화 기구(UNESCO)의 세계 문화적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⁹³⁾ 1971년 습지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ildfowl Habitat),⁹⁴⁾ 1974년의 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⁹⁵⁾ 그 예들이다.

그리고 지역적 협약으로는 1968년 자연과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아프리카협약(African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1979년 유럽 야생동물 자연 서식지 보존협약(Convention on Conservation of European Wildlife and Natural Habitats),⁹⁶⁾ 1940년 서반구 지역에서의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 보존 협약(Convention on Nature Protection and Wildlife Preservation in the Western Hemisphere) 등이 있다.

이런 보호구역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2) 종 다양성의 보호

종의 다양성 보호에 관한 협약들이 특정 지역의 보호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으나, 향후 자원개발에서 종의 다양성 보호로 인해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대표적인 협약은 1992년 종의 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⁹⁷⁾ 1983년 이주성 야생동물 보존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

92) Ibid, p.137.

93) 우리나라는 1998년 세계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11년 4월 15일 기준 <<http://whc.unesco.org/en/about/>>를 참조하면 된다.

94) 우리나라는 1997년에 습지협약에 가입하였다.

95) 우리나라는 1994년 서명하고, 1999년 비준하였다.

96)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이라 한다.

97) 우리나라는 1992년 서명하고, 1994년 비준하였다.

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을⁹⁸⁾ 들 수 있다.

종의 다양성 협약에 따르면 체약국들은 ‘종의 다양성 전략, 계획 또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⁹⁹⁾ 이로 인해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지역에서의 자원개발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3) 인류공통자산의 보호

국제사회는 해저(International Seabed), 남극(Antarctica) 및 대기권 밖(Outer Space)의 공간을 인류공통자산으로 보존하고 있다.¹⁰⁰⁾

인류공통자산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우선 1982년 국제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들 수 있다.¹⁰¹⁾ 1982년 해양법협약은 심해저 자원개발과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륙붕과 200해리 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자원개발은 연안국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공해(High Sea)에서의 자원개발은 국제 심해저 위원회의 규제에 따르게 되어 있다.¹⁰²⁾

남극은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에 의해 12개 국가

98) 우리나라는 이주성 야생동물 보존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http://www.cms.int/about/Partylist_eng.pdf>을 참조하면 된다.

99) Article 6. General Measures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particular conditions and capabilities:

(a) Develop national strategies, plans or programmes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or adapt for this purpose existing strategies, plans or programmes which shall reflect, inter alia, the measures set out in this Convention relevant to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and

(b) Integrate, as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into relevant sectoral or cross-sectoral plans, programmes and policies.

100) 인류공통자산은 'res communis' 영어로는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로 표현되고 있다. 다만 인류공통자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있다.

101) 우리나라가 1983년 서명한 해양법협약은 1995년 비준 및 국회동의를 거쳐 1996년부터 발효되었다.

102) 국제 심해저 위원회는 많은 심해저 자원개발에 관한 규제기준들을 제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2011년 4월 15일 기준 <<http://www.isa.org.jm/en/documents/mcode>>를 참조하면 된다.

에¹⁰³⁾ 실질적인 통제권이 부여되었으며, 명시적인 개발 금지는 없었으나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합의되었다. 그 후 1991년 명시적으로 남극에서의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의정서(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가 채택되었다.¹⁰⁴⁾ 또한 1988년 남극에서의 자원개발활동의 규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gulation of Antarctic Mineral Resource Activities)이 작성되었으나 프랑스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현재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 환경영향평가와 대중 참여

많은 조약들이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종 다양성 협약·국제해양법 협약·남극 환경보호 의정서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1991년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UNECE 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 Trans-boundary Context)과¹⁰⁵⁾ 1974년 노르딕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etween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¹⁰⁶⁾ 등은 지역적 협약의 대표적인 예이다.

1998년 유럽 경제위원회의 아루스 협약(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으로¹⁰⁷⁾ 대표되는 최근 커다란 경향은 자원개발과 관련된 절차에 이해관계자인 대중들의 참여(Public Participation)가 적극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다. 아루스 협약에 의해 정보에의 접근,¹⁰⁸⁾ 정책 결

103) 12개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칠레,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공, 러시아, 영국과 미국이다. 현재는 45개의 체약국과 28개의 자문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104) Article 7 Prohibition of Mineral Resource Activities

Any activity relating to mineral resources, other than scientific research, shall be prohibited.

105) 간단히 에스푸 협약(Espoo Convention)이라고 한다.

106) 협약의 내용은 2011년 4월 15일 기준

<http://untreaty.un.org/unts/1_60000/30/16/00058775.pdf>을 참조하면 된다.

107) 이를 간단히 'Aarhus Convention'이라 한다.

108) 아래 아루스 협약 제4조에서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Environmental

정에의 참여¹⁰⁹⁾ 및 재판 또는 다른 구제절차에의 접근권이¹¹⁰⁾ 보장되고 있다.

3. 자원개발 실행 단계에서의 환경보호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 변화는 자원개발의 실행 단계에서의 규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대기환경, 수질환경 분야에서의 환경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1) 자원개발과 대기환경의 보호

생산·추출·제련 등 자원개발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주로 국내법적인 규제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국제법적 차원의 협약도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초국경적 대기오염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조약으로는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¹¹¹⁾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¹¹²⁾이다. 위 조약과 의정서로 인해 자원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프레온 가스(CFCs), 할론(Halons) 등의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이 급격하게 제한되었다.

또한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¹¹³⁾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¹¹⁴⁾ 의해 온실가스의 감축에 대한 포괄적인 협약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석탄 및 석유 산업

Information)을 규정하고 있다.

109) 아루스 협약 제6조가 특정 활동에 관한 정책결정에의 참여권(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s on Specific Activities)을 보장하고 있다.

110) 아루스 협약 제9조가 법원 등에 의한 판단을 구할 권리(Access to Justice)를 보장하고 있다.

111) 우리나라는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112) 의정서는 수차의 개정이 있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의정서에도 가입하였다.

113)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하였고, 1994년부터 발효되고 있다.

114) 우리나라는 1998년 서명하고, 2002년 국회동의를 얻었으나 2005년부터 발효되었다.

등 기존의 화석연료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외에도 1979년 유럽 경제위원회의 초국경적 광역 대기 오염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도 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산화질소 등의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다.

(2) 자원개발과 수질환경의 보호

해수와 지하수에 대한 보호가 최근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조약들을 찾을 수 있다.

유엔 해양법협약은 물론이고 1974년 육상 활동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협약(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Land Based Sources),¹¹⁵⁾ 1972년 쓰레기 등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 and Other Matter),¹¹⁶⁾ 같은 해 선박과 항공기로부터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협약(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from Ships and Aircraft)¹¹⁷⁾ 등이 자원개발 과정에 발생하는 수질오염 방지와 관련된 조약들이다.

4. 생산물 통제를 통한 환경보호

국제사회는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개발에 관한 권리취득과 생산 단계에서의 환경보호 정책뿐 아니라, 최종 생산물과 그 거래에 대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무역기구 및 북미자유무역지구협정을 포함하여, 위험폐기물 처리에

115) 간단히 'Paris Convention'이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체약국이 아니다. 이 협약은 인해 육상 및 해상에서의 광물 및 석유·가스 개발 활동에 잠재적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파리협약 제1조는 체약국들로 하여금 육상 활동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타 이와 관련된 조치를 위하도록 하고 있다. 파리협약의 내용은

<<http://www.dipublico.com.ar/english/treaties/convention-for-the-prevention-of-marine-pollution-from-land-based-sources-paris-conven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6) 간단히 'London Dumping Convention'이라 한다.

117) 간단히 'Oslo Convention'이라 한다.

관한 1989년 바젤협약(Convention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을 대표적인 협약으로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폐광물질, 광물조각 등의 국제 거래가 심각하게 위축되었다.¹¹⁸⁾ 이 외에도 화학물질의 거래를 제한하는 1998년 유엔환경계획과 유엔 식품 및 농업기구의 특정 위험 화학물질과 농약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¹¹⁹⁾ 있으며, 이로 인해 일정한 광물이 사전 통보가 요구되는 물질로 분류될 우려가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최종 생산물의 소비 단계에서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8년 유엔 경제위원회의 중금속 의정서(Protocol on Heavy Metals)¹²⁰⁾가 대표적인 예이다.

5.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연성법(Soft Law)

자원개발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어떻게 지속가능한 개발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원개발 업계 자체도 스스로의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물이 ‘광업, 광물 및 지속가능한 개발(Mining, Miner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MSD)’이라는 보고서이다.¹²¹⁾

한편, 많은 국제금융기관들이 환경보호를 금융의 조건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은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특히 2001년 7월 세계은행 이사회

118) Geroge(Rock) Pring and Linda Siegele, above n. 91, p.144.

119) 우리나라는 1999년 서명하였고, 2004월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간단히 ‘PIC Convention’ 또는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이라고 한다. 이 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2011년 4월 15일 기준 <<http://www.pic.int/home.php?type=t&id=49>>을 참조하면 된다.

120) 자세한 내용은 2011년 4월 15일자 기준 <http://www.unece.org/env/lrtap/hm_h1.htm>을 참조하면 된다. 이 의정서는 원유에서 납을 제거하고, 배터리 같은 제품에서 중금속의 배출을 저감하도록 하고 있다.

121) 관련 자료는 2011년 4월 16일 기준 <<http://www.iied.org/sustainable-markets/key-issues/business-and-sustainable-development/mining-minerals-and-sustainable-development>>에서 찾아보면 된다.

는 새로운 환경전략을 승인하였고, 같은 해부터 발췌 보고서(Extractive Industries Review)를 작성하기 시작했다.¹²²⁾ 이 보고서는 환경 개선 및 빈민 감소 정책의 목적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적절히 실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세계은행의 기준들과 더불어 자원개발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많은 연성 국제법들이 있다. 1972년의 스톡홀름 원칙, 1992년의 리오선언, 의제 21 등이 그 예이다.

그밖에 광산업계 또는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형성된 연성법들이 있다. 산업표준으로 베를린 기준(Berlin II Guidelines for Mi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¹²³⁾ 예로 들 수 있으며, 국제표준기구(ISO)가 작성한 ISO 14000은 많은 광업회사들이 환경경영과 관련하여 이미 가입하고 있는 기준이기도 하다.

자원개발과 관련한 비정부단체로는 자연보호를 위한 국제연합(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과 시에라 클럽(Sierra Club) 등을 들 수 있고, 자연보호를 위한 국제연합은 최근 광업자단체인 국제광업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 Metals)과 함께 광업에서의 중 다양성 문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시행하기도 했다.¹²⁴⁾

VI. 결 어

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분쟁이 따르는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이와 관련된 국제조약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개발을 독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22) 세계은행 보고서는 2011년 4월 16일 기준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TOPICS/EXTOGMC/0,,contentMDK:20605112~menuPK:592071~pagePK:148956~piPK:216618~theSitePK:336930,00.html>>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23) 최근에 작성된 것이 '베를린 II'이며, 그 내용은 2011년 4월 16일 기준, <<http://commdev.org/content/document/detail/903/>>에서 확인하면 된다.

124) Geroge(Rock) Pring and Linda Siegele, above n. 91, p.137.

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는 투자자 보호·국유화·분쟁의 해결·환경보호로 구분하여 양자 및 다자조약을 포함하는 국제조약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점은 향후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이 북한을 통해 들어온다면 위와는 별도로 수송에 있어서의 국제조약이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현장조약에서의 탈퇴를 명확히 한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의 국제투자 및 거래와 관련된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국제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러시아의 노력은 북한을 통과하여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¹²⁵⁾ 이 협약안과 에너지현장조약과의 중요한 차이는 에너지 수입국이 아니라 판매하는 국가의 입장이 많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과 자원주권주의가 강조되고 있다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현장조약을 비준하여 이 체제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다자조약의 틀을 형성할 것인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부국들과의 양자조약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자원개발 참여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가 확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125) Draft Convention on Ensuring International Energy Security.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A. 저서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10.

류권홍, 국제 석유·가스 개발과 거래 계약, 한국학술정보, 2011.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6.

B. 논문

류권홍, “석유·가스전 개발에 있어서의 수용 또는 국유화 - 간접적·점진적 국유화를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26권 제3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외국 문헌〉

A. 저서

BP, Energy Outlook 2030, London, January 2011.

Claude Duval, Honoré Le Leuch, André Pertuzio, Jacqueline Lang Weaver, International Petroleum Exploration and Exploration Agreements, Barrows Company Inc, 2009.

Energy Charter Secretariat, The Energy Charter Treaty, A Reader's Guide, 2002.

Ernst E. Smith, John S. Dzienkowski, Owen L. Anderson, John S. Lowe, Bruce M. Kramer, Jacqueline L. Weaver, International Petroleum Transaction (3rd Edition), Rocky Mountain Mineral Law Foundation, 2010.

ExxonMobil, The Outlook for Energy a view to 2030, 2011.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8.

ICSID, Database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2011.

Noah Rubins, N. Stephan Kinsella,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tical Risk and Dispute Resolu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OECD, 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Foreign Property, 1967.

World Bank, *The World Bank 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1962.

B. 논문

Daniel Johnston, “Changing fiscal landscape”, *Journal of World Energy Law & Business*(vol. 1, No. 1) 2008.

Ernest E. Smith & John S. Dzienkowski, “A Fifty-Year Perspective on World Petroleum Arrangement”, 24,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1989.

Geroge(Rock) Pring and Linda Siegele, “International Law an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Mineral Law and Policy*, Klumer Law International, 2005.

Paul Stevens, “National oil companies and international oil companies in the Middle East: Under the shadow of government and the resource nationalism cycle”, *Journal of World Energy Law & Business* Vol. 1, No. 1, 2008.

Robert Pritchard, “Safeguards for Foreign Investment in Mining”,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Mineral Law and Policy*, Klumer Law International, 2005.

Thomas W. Wälde, “Investment Arbitration under Energy Charter Treaty: From Dispute Settlement to Treaty Implementation”, 12 *Arbitration International*, 1996.

UNCTAD, “Chapter I , Global Trends, FDI Flows in Decline”,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C. 결정

Yukos Universal Limited(Isle of Man) and The Russian Federation, PCA Case No. AA 227..

Malaysian Historical Salvors, SDN, BHD v. Malaysia, [2007], (ICSID Case No. ARB/05/10).

<국문초록>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 스위스 등은 모든 원자로를 장기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기존 화석연료의 최대 단점인 환경문제의 해결해줄 수 있으며, 저렴한 전력 생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던 원자력 발전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중요한 연료로 논의되고 있으나, 2011년 BP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이 되어도 신재생에너지의 전체에너지에 대한 비율이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30년을 기준으로 석유·석탄·천연가스를 포함하는 화석연료가 각 전체 에너지의 약 26-27%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주된 에너지원으로서의 지위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화석연료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또한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원의 개발과 관련되어 논의되는 위험은 아주 다양하며, 위험의 정도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중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 투자자 보호, 국유화, 분쟁의 해결 그리고 환경보호의 문제와 관련된 국제협약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분쟁이 따르는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로서는 이와 관련된 국제조약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개발을 독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에너지현장조약을 비준하여 이 체제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다자조약의 틀을 형성할 것인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부국들과의 양자조약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자원개발 참여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주제어 : 석유·가스 개발, 국제협약, 투자자 보호, 국유화, 에너지현장조약, 분쟁의 해결, 환경보호

International Treaties on Energy Resources Development

Ryu, Kwon-Hong*

As the result of Fukushima nuclear plant accident in Japan,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Swiss have announced that those will close nuclear plant in the long term. And this trend is the same in Korea. Nuclear policy which has been regarded as a best one because of environmentally-friendly feature and low generation cost is under serious attack.

Though renewable energy has been treated as important alternatives, the portion of renewable energy in total energy in 2030 will be just less than 10% according to Energy Outlook of BP. In 2030, fossil fuel including oil-gas-coal will take the portion of about 26-27% of total energy respectably. It means that fossil fuel will keep its position as the main energy sources till 2030.

Those facts shows that even green development focusing on renewable energy is important, it is required to participate strongly in developing fossil fuel in the world as well as to develop and implement energy efficiency policie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re are variety of risks in resources development and the degrees of each risk are different on case by case. In this article, the point was given to international treaties treating the issues of investor protection, nationalization, dispute resolution,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vestors who are in energy business with high risks should concern international treaties relating to its business. Further, it is necessary for Korea which has to encourage our companies to develop energy sources in global arena to try to address risks happening in foreign investment in order to protect our nationals.

It is time for Korea to decide whether it will ratify Energy Charter Treaty or set up another multilateral treaty and to try to make bilateral treaties with countries which are resource rich in order to decrease the risks in investment. These efforts will contribute to upgrade our energy security.

Key Words : Oil and Gas Development, International Treaties, Investor Protection, Nationalization, Energy Charter Treaty, Dispute Resolution, Environment Protection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Law of Wonkwang University, Attorney at Law in Korea